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 323

I. 종교인소득이란? .....	324
1. 개념 .....	324
2. 분류 .....	324
II. 종교관련종사자 .....	327
1. 개념 .....	327
2. 구분 .....	327
III. 종교단체 .....	328
1. 개념 .....	328
IV.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	329
1.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	329
2.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	330
3.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	331
4. 연말정산 시기 .....	331
5.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제출 .....	332
6.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내역 .....	332
7.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 .....	332
8. 지급명세서 제출시 혜택 .....	333

부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337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

- ※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첨부서류
- ※ 「비고」란에 '국세청'으로 표시된 항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해야 함)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인 적 공 제	주민등록표등본	시 · 군 · 구청 또는 읍 · 면 · 동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 · 군 · 구청 또는 읍 · 면 · 동주민센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본인 작성	
	재학증명서(취학의 경우)	학교	
	요양증명서(요양의 경우)	요양기관	
	재직증명서(재직의 경우)	직장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상 형편)	본인 보관	
	입양자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시 · 군 · 구청 또는 입양기관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읍 · 면 · 동주민센터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 · 군 · 구청	
장 애 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읍 · 면 · 동주민센터	
	상이자 상이자증명서 사본	국가보훈처	
	그 외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의료기관	
주 택 자 금	금융회사 등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금융회사 등 읍 · 면 · 동주민센터
	월세액 ·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 세액공제 명세서	본인 작성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대주(貸主)	
	주민등록표등본	읍 · 면 · 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보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보관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약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보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읍 · 면 · 동주민센터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시 · 군 · 구청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주택자금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기준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대환, 차환, 연장 시)	등기소, 본인 보관 금융회사 등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또는 본인 보관	국세청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중소기업중앙회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또는 본인 보관	국세청
투자조합 출자공제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본인 작성		
	출자(투자)확인서	투자조합관리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본인 작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카드회사		국세청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연금보험료	연금납입확인서	연금계좌취급자		국세청
	연금납입확인서	연금계좌취급자		국세청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보험사업자		국세청
의료비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본인 작성		
의료기관·병원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병원, 약국		국세청
난임시술비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병원, 약국		
안경(콘택트렌즈)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국세청
의료비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의료기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병원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구입처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요양기관		국세청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등		
산후조리원비용	이용자의 성명과 이용대가를 확인한 영수증	산후조리원		국세청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보험회사 등		국세청
교육비	수업료, 등록금 등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기관	국세청
	취학전이동 학원비	교육비납입증명서	학원	
	교복구입비	교육비납입증명서	구입처	
학교 외 도서구입비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교육기관		
장애인특수교육비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해당 입증 서류	사회복지시설 등		국세청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교육비	학자금대출 상환액	교육비납입증명서	한국장학재단 등	국세청
	국외교육비	교육비 납입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재학증명서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가 국내 근무하는 경우)	국외 교육기관 교육기관 등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본인 작성 중앙선관위 또는 기부처 기부처	국세청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미분양주택확인서 (근로자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금융기관이 발행한 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세액감면	외국인 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본인 작성	
	월세액	월세액·거주기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작성 읍·면·동주민센터 본인 보관 본인 보관 국세청	
	중소기업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음)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근로자 등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내 주민등록 없는 재외국민)	재외공관	

※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은 1장만 제출할 수 있음

※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증명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http://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http://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http://www.realtyprice.kr:447/))
-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http://efamily.scour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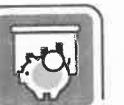
## &lt;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연말정산 비교&gt;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1. 연말정산 대상자	모든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공적연금 소득자
	(다른 소득 없이 해당 연말정산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수입금액	총급여	사업소득 수입금액	총연금액
3. 소득금액 (①)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수입금액 × 소득률)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4. 종합소득 공제금액 (②)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 연금이자비용공제)	
5. 과세표준 (①-②)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금액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금액	연금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금액
6. 세율	6~42%	6~42%	6~42%
7.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lt;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 비교(소법 §122)&gt;

항목	구분		비고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	
연간 근로소득	국외원천 소득포함	국내 원천소득	「소득세법」 제3조에 따른 단기거주 외국인은 국외원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근로소득공제	○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본인만 공제 본인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	○	본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에 한함
특별 소득공제	건강 · 고용보험료 등 주택자금	○ ×	외국인은 세대주 ·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등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주택마련저축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여 출연한 금액에 한함
세액공제	근로소득 자녀,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	○ ○ ×	외국인은 세대주 ·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여 출연한 금액에 한함 납세조합 가입자가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 원천 징수 신고 · 납부시 적용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 · 세액공제 대신 '급여총계 × 단일세율(19%)' 선택 가능(p.108 참조)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자녀 세액공제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자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